개선사항 공개안

1. 금융회사명 : (경기)세람저축은행

2. 제재조치일 : 2022. 3. 18.

3. 조치내용

대 상	내 용
기 관	개선사항 2건

4. 조치대상사실

(1) 상근 임원 근태관리 및 보수지급 관련 내부통제 미흡

㈎ 상근 임원 근태관리 미흡

「윤리강령」 제15조에 따르면 임직원은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성실, 근면하게 직무를 수행하도록 규정되어 있고, 「윤리강령 준수서약서」에 따라 전 임직원은 부여된 업무를 성실히 집행하고 태만 없이 맡은 직책을 완수할 것을 서약하였음에도,

저축은행의 주요 경영진인 일부 상근 임원은 업무를 집행함에 있어 불규칙적인 출근 등으로 그 역할과 책임을 충실히 수행하지 않아, 관련 업무에 대한 신속한 대응 및 소관부서에 대한 내부통제*가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을 우려가 있으므로,

* 내규 「내부통제기준」 제10조 등에 따르면 조직 및 업무를 관리하는 임직원은 소관 조직 및 업무와 관련된 내부통제를 총괄하여야함

앞으로 상근임원의 업무 충실도를 제고하고, 이에 대한 관리·감독이 철저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근임원의 근태 관리체계 및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하시기 바람

㈏ 임원의 보수지급 관련 내부통제 미흡

표준규정 「지배구조 내부규범」 제34조에 따르면 임원에 대한 평가는 정량적인 평가와 정성적인 평가를 병행하고 그 평가결과를 임원의 임면, 보수지급 등에 활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,

2019.10.16.~검사착수일 현재까지 임원의 보수를 성과평가 등과 무관하게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가 의결*한대로 지급하고 있어, 주주와 임원을 겸임하는 경우 이해상충 발생 우려가 있으므로

* 등기이사는 주주총회, 미등기이사는 이사회가 각각 보수금액을 결정하고, 보수지급대상자인 임원과 주주가 본인 내지 특수관계인이므로 이해상충 소지가 있음

앞으로 임원에 대한 직책별 목표설정 및 성과분석을 실시하고 이를 보수지급 및 임면에 연계하는 등 합리적인 세부기준을 마련하고, 현행 주주 및 임원 구성을 감안하여 임원 보수지급 관련 이해상충방지 체계를 마련하는 등 내부통제*를 강화하시기 바람

* 내규 「내부통제기준」 제4조 등에 따르면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, 업무의 종류, 성격, 이해상충의 정도 등을 감안하여 업무 효율성,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무분장 및 조직구조를 수립하고 내규에 반영하여야 함

⑵ 직원 업무수행 관련 내부통제 부적정

내규 「내부통제기준」 제4조 및 제11조에 따르면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분장하고, 업무수행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 등을 내규 등으로 문서화하여야 하는데,

2019.10.16.~검사착수일 현재까지 인사총무팀 직원*이 저축은행의 업무와 무관한 사유로 운전업무를 수행하는 등 업무와 관련한 내부통제가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, 업무수행을 소홀히 하거나 이해상충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

* 비서・총무 및 운전・서무 업무 담당자

앞으로 직원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업무분장하고, 타업무종사 소지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등 관련 업무를 개선하시기 바람